

[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]  
**검 토 보 고**

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

○ 제출일 : 2003. 6. 11.

○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6. 12.

다. 의안번호 : 제 2003 - 25호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“거창군농업인 소득지원기금”을 “거창군농업발전기금”으로 전환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당초의 제명 “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”로 개정함(안 제명).
- 기금의 운용관리는 거창군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- 융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인소득증대, 지역명품육성, 축산환경, 농·축산업 운영자금, 농업재해 피해복구사업등이며, 보조지원 대상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, 이차보전지원, 기타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규정함(안 제8조).
- 융자금 지원조건은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3년거치 5년균분상환, 생산 및 운영자금 1천만원이하 1년 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규정함(안 제 11조).

-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함(안 부칙 제2조).

### 3. 검토의견

#### ○ 보조금의 UR협상결과 허용대상 여부

구 분	현 행	변 경
용 자 금	○ 시설자금 : 2천만원 ○ 생산 및 운영자금 : 1천만원	○ 시설자금 : 5천만원 ○ 생산 및 운영자금 : 1천만원
용 자 금 상환기간	○ 시설자금 : 2년거치 3년균분 ○ 생산 및 운영자금 : 1년거치 2년균분	○ 시설자금 : 3년거치 5년균분 ○ 생산 및 운영자금 : 1년거치 3년균분
보조지원 대 상	( 신 설 )	○ 농작물 피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, 심의회에서 정한 기타 보조지원사업

#### 중점검토사항

-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UR협상결과 동 보조금이 감축대상보조금(Amber Box)에 해당 하는지, 허용대상보조금(Green Box)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감축대상 보조금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집행부에 허용대상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임.

- 조례안의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참 고

-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